

이·미용업소 거리두기 4단계 핵심방역수칙 의무

- 대 상 : 이·미용업
- 적용기간 : 2021. 9. 13.(월) 0시 ~ 2021. 10. 3.(일) 24시까지
- 위 반 시 :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
- 위반 당사자 : 10만원 / 관리·운영자 : 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
- 핵심방역수칙

4단계	이용 가능 인원 수	▲ 시설면적 8㎡당 1명
	영업시간	▲ 제한없음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-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■ 삼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* 좌-우측 구분 통행 등 ■ 이용자 외 동행 제한(권고)	■ 이용자 외 동행 제한(권고)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⑪ 예약제 운영 (권고)	
	■ 유선, 모바일 등 '예약제'로 분산 운영(권고)	■ 이·미용실 이용 전 유선,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(권고)
	⑫ 방역수칙 준수 점검	
	■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* '일일 점검표'에 따라 점검	
	⑬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	
	■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 섭취 금지 ■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■ 식사 시 대화 자제, 음식 나눠먹기 금지, 식사 후 환기	
추가 수칙	① 대화자제	
	■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 면도나 메이크업,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
영업소 내 게시

□ 5인(3인) 이상 사적모임 금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(3)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(3)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▶ 5(3)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(3)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
별도 조치 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
 ※ 사적모임 :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, 18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집합금지

□ 문의 :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-453-2630

남 동 구 청 장

